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6. 2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6월 24일

2. 회의방식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현 위 원

윤 면 식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10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 제11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1차 및 제12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0년도 제10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 제11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1차 및 제12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208호 『농협은행(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를 위반한 농협은행(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09호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에게 영업 전부정지, 그 대표이사에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0호 『이지스자산운용(주)의 (가칭)브이씨인베스트먼트(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지스자산운용(주)이 (가칭)브이씨인베스트먼트(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1호 『◇◇◇(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212호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213호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제214호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 ▲▲▲에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 ♣♣♣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동 일괄 상정 안건은 진술인이 동일한 제215호와 제216호 안건을 보고 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제시된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의결안건 제215호 『◇◇◇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216호 『▲▲▲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및 ▲▲▲이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은 2년여 전부터 금감원의 검사 및 이에 대한 언론보도로 영업활동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고 영업정지에 대한 불안감에 상당한 자금이 유출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이미 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임. 이대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그대로 내려진다면 대표이사로서 부끄럽지만 회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이 들고 있음. 본 건은 비록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나, 부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저희 회사와 임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음. 첫째, 소규모 자산운용사에 영업정지 6개월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임. 구체적으로 고객 접점이 없는 운용사로써는 판매사를 통하여 고객의 니즈와 시장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으로부터 운용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볼지라도 독립적인 투자판단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라는 점, 투자자 피해가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6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고 할 것임. 특히 2019년 5월 경 ◇◇◇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제재 절차가 1년여 동안 장기화되면서 ◇◇◇은 실질적으로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음. 즉, 영업정지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의 환매가 발생하였고, 신규펀드 설정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기 때문에 1년의 기간 동안 영업상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기관경고’ 조치로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람. 둘째, 과징금 제도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서서 과징금에 대한 부분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산운용사가 본인이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를 위하여 집합재산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 모집금액 전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가 자신의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한 경우와 같이 전체 모집금액에 대비해서 과징

금이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하지만 ◇◇◇이 본 건과 관련하여 거둔 운용수익은 총 3억 4,000만 원에 불과함. 따라서 이런 운용보수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만을 부과하여 주시기를 바랍.

- (진술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로 속칭 ○○○ OEM 펀드 제재 원안은 취소 또는 대폭적으로 경감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함. 먼저, OEM으로 규정한 금감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려움. OEM펀드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명령·지시·요청의 개념인데,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은 ○○○ 담당자의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 펀드 제재가 진행되기 전까지 OEM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정립되지 않았음은 분명함. 금감원은 운용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운용사 마케팅담당자와 ○○○ 펀드 판매담당자 간의 통화내역과 SNS, 이런 간접적 정황 증거를 OEM의 유력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용사는 채권운용을 담당하는 운용본부에서 작성한 신용분석자료를 전부 제출하였고 녹취록을 포함해서 ○○○의 제안을 수정·거부한 사례를 모두 반증으로 제출했음. 이러한 반증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OEM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금년 1월말에 금융위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OEM제재에 대한 개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용한다면 소급입법 적용금지라든가, 법률에 대한 확대·유추 해석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봄. 아시다시피 DLF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가 금년 1월말에 OEM관련 유권해석을 공식화하였음. 그런데 만약 이 유권해

석을 이 펀드에 원용한다면 이 부분은 시리즈 과징금 부과
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소급입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
임.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한 OEM의 개
념과 범위를 무려 4년 6개월 전에 최초 설정되고, 3년 전에
신규 설정이 이미 중단된 이 펀드에 대해 확대해석해서 제
재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함. 두 번째로
OEM이 아니라는 주장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초 양형결정시에 잘못된 사례를 적용했다
고 보이고 감경사유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봄. OEM이
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중징계해야 된다는 법은 없을 것
임. 다음으로 감경사유 관련해서 이 펀드가 투자적격채권이
편입되어 있고 또 DLF와 ●●● 등과 달리 고객손실이 전
혀 발생하지 않았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고 생각함. ○○○과의 제재수위 형평성 문제는 ◇◇◇에
20억 원의 금전제재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에 대해서 2조 원의 금전제재가 확정되는 것과 마찬
가지임. 여기에 신상징계도 모두 예외 없이 전원 중징계임.
이 부분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문제를 떠나서 사회 통념상의
상식이라든가, 최소한의 공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야 될 문제라고 생각함. 끝으로 본인에 대한 OEM 제재수위
는 최초 사례를 이중, 삼중으로 중첩해서 적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기 때문에 정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최초 검사
이후 지난 2년 동안 많은 논란이 거듭되면서 지연되었고 운
용사라든가, 관련 당사자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음. 저 역시 금감원 최초
검사 나왔을 때 이미 ◇◇◇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옮겨간 회사에서도 작년 12월에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석연치 않은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물러났음. 개인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또 다시 신상징계까지 하신다면 생계의 수단까지 막아버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막막함. 마지막으로 결코 제가 짧게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라든가, 정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대표이사의 제재양정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2019년에 OEM으로 제재 받은 것이 3건이 있었음. 6월16일에 ◆◆◆이 OEM생산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고, 7월17일에 ■■■이 받았음. 그런데 ㉮㉮㉮은 8월29일 임. 저희 건은 6월13일이고 ㉮㉮㉮은 그 후에 됐는데 그중에서 대표이사들이 제재를 받은 것이 ㉮㉮㉮의 ●●●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를 받는 것이 1건 있음. ㉮㉮㉮은 하이일드펀드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크펀드를 30%이상 편입하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것임. 그리고 금액은 저희보다 1,200억 원 정도 많고, 대상펀드 수는 45개로 운용사 보수는 30~50bp임. 지시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희는 ○○○이고 여기는 증권회사임. 그래서 여기 보면 처벌조항은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징계수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 ㉮㉮㉮은 과태료 5억 원이고, 영업정지가 없음.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것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주의'로 경징계에 그치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증권신고서 미제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음. 과징금과 관련된 부분임. ▲▲▲이 본 건 펀드를 운용했던 설정기간 등을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임. 두 번째 주장은 자본시장법 제430조에 의하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여야만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할 텐데 저희가 기제출한 증거자료, 언론기사 같은 것을 보면 당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혼란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있음.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임. 마지막으로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동종의 원인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점을 참작해서 본 건에서도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된다는 것이 과징금과 관련된 저희 예비적 주장임. 다음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업계에서는 소위 OEM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요건은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지시 등을 받고, 둘째는 집합투자자산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해야지만 본 조항으로 의율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6호임. 그런데 본 건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첫째는 투자매매업자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가 의문이라는 점임. ◇◇◇의 경우에는 그간의 과정에서 녹취록 같은 것들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에서는 녹취록 같은 것이 제출되지 않았고 정황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증거재판주의에 비추어보면 이런 것이 맞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임. 두 번째는 설사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지시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행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됨. 그런데 기재출한 증거자료에서 보듯이 ▲▲▲의 투심위를 보면 거절사례들이 몇 개 있음.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임.

- (진술인) 우선, OEM 관련해서는 펀드 설정 전 업무협약의 과정에서 판매사인 ○○○과 당사 담당자 간에 업무협조를 명령지시로 광의로 해석하는 것은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업무협조가 일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기성복인 공모펀드와는 달리 맞춤형. 즉, 테일러메이드(tailor-made)형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판매사와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보면 운용사가 피할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임. 특히, 이와 관련된 최근 제재사례들을 보더라도 대표이사와 회사에게 중징계 한 사례가 거의 없음. 유사사례인 2019년 7월 ■■■의 경우에는 기관주의와 임원주의 1명, ■■■의 경우에는 2019년 10월 기관주의와 임원주의 1명이었음. 따라서 해당 사항으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일부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4억 7,000만 원,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는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임. 제재의 대상이 되는 펀드는 2017년 5월12일부터 2017년 10월24일 중에 설정된 펀드이고 현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과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은 저희들이 펀드를 설정한 이후인 2017년 10월31일과 2018년 4월10일에 제

정되었음. 따라서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여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진술인) 명령·지시 부분임. 16건을 OEM방식 명령·지시로 이행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을 보면 이 16개의 건이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래서 이 16개가 만들어진 경위를 보게 되면 2017년 6월8일부터 2017년 8월29일로 3개월 미만으로 단기간에 걸쳐서 시간의 근접성이 있음. 그다음에 16개 펀드 모두 적용법규가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항, 침해된 법규 규정의 동일성임. 그렇다면 16개를 동일한 행위의 반복성으로 인정해서 이 16건을 1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저희 은행이 발행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진술하고자 함. 즉, 저희 은행이 발행공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려면 대략 6가지 정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봄. 첫째는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발행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야 함. 둘째, 펀드 판매은행이 자본시장법상 법

정개념인 주선인에 해당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투자대상이 동일한 여러 발행인, 이 사건에서는 펀드들을 통합해서 발행공시 위반 여부. 즉,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이러한 해석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침익적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섯째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고의', '중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른 말로 2017년경에 이 펀드를 판매할 당시 펀드 판매은행이 향후 주선인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러 펀드들이 통합되어서 50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이 그 당시에 있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규정 문언의 해석상 저희 은행이 발행인. 즉, 펀드로부터 어떤 용역보수 내지 대가를 받은 것이 있어야 과징금 계산이 산술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임.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 사실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수궁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쟁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여 금융위의 신중한 판단을 꼭 받아보고 싶었음.

- (진술인) ○○○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아니나 본 건 수익증권 공모의 주선인이기 때문에 발행인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논리 때문임. 그러나 피해자가 없는 이번 사례의 경우 저희 대리인은 매우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점을 떨쳐버릴 수 없음. 본 건과 관련해 ○○○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네 가지 쟁점이 논란의 여지없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즉, 본 건 펀드가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그러니까 공모인지, 그리고 펀드판매사인 ○○○이 주선인인지, 주

선인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 미제출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과연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지, 펀드판매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 중요한 쟁점 네 가지임. 첫째, 본 건 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 공모에 해당되어야 함. 그런데 본 건 과징금 부과안은 각 펀드를 하나의 투자신탁으로 간주해 각각의 투자자수를 합산하면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사모가 아닌 공모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는 신탁의 법리와 정면으로 배치됨. 둘째, 펀드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상 Gatekeeper의 역할을 요구받는 주선인에 해당되어야 함. 아시다시피 자본시장 규율 체계 및 실무상 주선인과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사는 명백히 구별됨. 즉, 법상 주선인의 규율대상은 증권회사로 한정되고 그 역할도 증권회사 고유업무인 인수업과 유사함. 본 건 제재안은 펀드판매 플랫폼에 가까운 은행, 보험사, 농수축협, 신협, 심지어 우체국에게 전문금융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에 대해 Gatekeeper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임. 그런데 펀드판매회사 제도도입 배경과 그간의 시장 관행 등에 비추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람. 셋째,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주선인에게도 과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그런데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발행인 외의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주선인 도입 취지나 업무규정 그리고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규정에 대해 설명 드렸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판매사인 ○○○ 직원들이 알고 있었거나, 즉, 고의이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어야 함. 그런데 수익증권은 판매사 제도도입 당시부터 자본시장법 제

정시까지에는 아예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음.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주선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본 건과 유사한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지도감독이나 교육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 이번과 같은 법 적용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 (위원) 지금 3건을 들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소급적용이 나옴. 소급적용에 대해 왜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 (참여자) 일반적인 경우 소급적용금지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논점이 다름. 제119조제8항 시리즈증권 규제에 관련된 규정이 이 펀드 판매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규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제재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규정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적용되었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규정인지, 만약 후자라면 소급적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음.
- (진술인) 발행공시 위반은 과징금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형사처벌 사항이기도 함. 형사처벌 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인데 법 제444조나 제445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이 법 제119조제8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도 구성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 구성요건이 그전 행위시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제211호~제214호 안건이 있고, 제215호~제216호 안건이 있는데 소급적용이라는 부분이 여러 번 나왔고, 그다음에 과징금이 과하다는 부분이 나오고 OEM이슈도 나왔음. 일단, 소급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기존에 ♠♠♠에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2017년 3월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현행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서 청약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서 50인이 되는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 ♠♠♠도 이 기준에 의해서 SPC를 통해 발행한 것에 대해서 20억 원 과징금 부과조치 되었음. ○○○은 입법은 2017년 10월에 되고 시행은 2018년 5월에 됐는데 왜 2017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느냐는 이야기임. 2017년 10월에 자본시장법에 입법을 하고 시행령 시행을 5월에 한 것은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좀 더 확정적으로, 그 당시 벌써 존재하고 있었던 '같은 종류의 증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이지 새로운 창설적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임. 그래서 이것은 소급적용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같은 종류의 증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과 시행령에 반영된 것이고 저희들은 ♠♠♠에 적용된 '같은 종류의 증권'을 근거로 해서 제재하게 된 것임.
- (위원) 또 하나 얘기 나왔던 것이 ㉡㉡㉡보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 (보고자) ■■■ 같은 경우에는 운용지시 대상채권이 해당 펀드 자산의 5%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전체 펀드수탁고 중에 운용지시 받아서 한 채권이 0.4%에 불과했음. 그러니까 위반의 정도가 전혀 다름. 예를 들어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채권단독펀드임. 그러니까 펀드 안에 채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건이라서 이것이 만약 위반이 되면 100% 펀드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회사 전체 펀드 수탁고의 27%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름.
- (위원) 진술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사항 중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부당 이득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은 운용보수는 3억 원에 불과한데 왜 과징금은 10억 원씩 하느냐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지 듣고 싶음.
- (보고자)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자조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증선위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과징금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인데 회사가 취한 이득에 비해서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증선위에서 수차례 논의가 되었고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오늘 결정들 간에 불균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어 보고 싶음.
- (보고자) 과징금 산정 문제는 경제적 이익 박탈 문제 때문에 수수료 수입 같은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고, 신분제재와 기

관제재 부분은 과거 OEM펀드로 해서 ◆◆◆에 대해 이와 유사한 영업정지 6개월을 했음. 그 수준과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제215호와 제216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최초 사례로써 자본시장법 및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금액은 ◇◇◇과 ▲▲▲은 10억 원으로 ○○○은 20억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법개정 수요가 있을 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그리고 제211호부터 제214호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제211호~제214호)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제215호~제216호) 각각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17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차환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8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9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 예대출 산정시 '20년 중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조정 하고, '20년 이후 취급되는 주택 임대·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0호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 업무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는 내용

- (위원) 은행지주회사도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은행도 동시에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는데, 신한외의 경우 (주)신한금융지주를 시스템 중요지주로 평가하고 나서 (주)신한은행을 또 추가적으로 지정해야 되는지?
- (보고자) 현재 규정상에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별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규정개정을 했었음. 그리고 바젤위원회(BCBS)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그룹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자은행에 대해서는 별도 자본 부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위원) 우리처럼 중복해서 평가하는 국가가 있는지?
- (보고자) 그러함. 홍콩의 경우 그룹과 또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자은행을 각각 평가해서 별도로 자본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제주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5개 금융지주 중 하나에 들어갔었던 것 아닌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함께 들어갔다가 이번에 빠지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종전에는 은행 지주회사 소속인 자은행의 경우에는 시스템적 중요도와 상관없이 모두 다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지정해서 추가 자본을 부과했었음.
- (위원) 지금은 제주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지주에서 빠져 나왔는지?
- (보고자) 그러함. 과거에는 지주만 평가해서 소속이면 전부 다 추가 자본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은행도 별도로 평가해서 자은행이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으면 별도로 D-SIB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1호 『(주)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직원에 대한 신분제재를 하고자 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본 예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만기재예치를 하려는 것이었고, 당시 VIP실 직원이 전산조작 요청을 하여 제반 확인은 당연히 VIP실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류에 따라 전산조작 업무만 처리하였음. 그리고 2014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처리 중에 유선으로 명의인들의 의사확인도 마친 후에 책임자에게 보고 하였기에 예금주들의 예금재예치 처리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음. 이후 2015년 대부계에서 VIP실 담당자로 업무 변경되어 예금만기 관리를 직접 하게 되었음. 예금주들께는 이번 연도부터는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처리가 안 되니 내점을 권하였음. 그래서 예금주 2명 모두 각각 점포 2군데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지점에서 전산처리 및 연장업무를 하였음. 처음부터 본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생긴 점은 깊이 반성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처리하였으나 이후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최종 2015년부터 바로 잡게 된 점, 그리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은행원으로서 법규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이 자기가 잘못된 것은 다 인정하고 2015년부터는 본인이 오히려 문제점을 바로 잡고 그 이후는 제대로 뒀다고 했는데, 이런 점은 고려할 방법이 없는지?
- (위원) ■■■와의 형평성 때문에 견책은 안 되더라도 본인이 고치려고 노력했던 점, 그리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

는 점을 참작해서 감경하는 것은 어떤지?

○ (보고자) 감봉1개월로 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기발표된 보험약관 개선방안 중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

○ (위원) 보험협회에 대해 신상품개발협의기구가 심사대상으로
확대되고 심사항목도 확대되어서 그 기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지금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
관 개선방안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편했는데, 협의기구 구
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 봤더니 학회가 3명, 의료
전문가 2명, 보험업계 3명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래서 이 협의기구를 보면 보험전문가, 의료분야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약관이 만들
어질지 의문이 들어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있는지 질문드
림.

○ (보고자) 소비자 눈높이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
함. 그래서 이번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
금 보험협회에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용규정이라

는 것이 있음. 이 규정을 개정해서 소비자단체 대표든 소비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3호 『한화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및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 대책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4호 『(주)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신용정보 등록과 관련한 정확성,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5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가이드라인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6호 『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과대계상 했을 때 그 책임은 회계담당임원한테 있는 것 아닌지? 이 임원이 공시담당임원이라면 이런 내용을 모르고 회계부서에서 주는 대로 공시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CFO를 같이 겸하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7호 『OOO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과징금 관련하여 원 처분 때 드렸던 소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가 있어 가능하면 과징금
부과 기일을 연기해서 한꺼번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소송이 있으니까 과징금 부과를 늦게 해달라는 취지
는 무엇인지?

○ (보고자) 지금 증선위 조치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이 된 상황임. 당초에는 과징금도 포함했다가 금융위
의결이 없다보니까 빠진 상황이며, 회사는 과징금 의결을
금융위 의결로 늦춰달라는 취지임.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법상 절차를 염두에 두고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저희 의견임.

○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 (참여자) 문제될 것은 없음. 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면 또 취소소송을 할 것이고 절차적으로 가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1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48분 폐회)